

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29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12월 22일

제안자 : 윤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상시적이며 실질적인 관리·지원·평가가 가능한 범위 내인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정하고,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창 수여나 그에 따른 부상 지급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- 정의 규정 내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현행과 같이 수정함(안 제2조).
-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공직자 개인이나 그 소속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하는 것에서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와 그에 따른 부상 지급이 가능하도록 실무에 맞게 수정함(안 제8조의2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로 같음
-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직자”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의회의원
2.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

안 제8조의2를 제10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안 제8조의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의2(청렴마일리지 제도)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,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렴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청렴 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등 청렴 활동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조성 및 확산하고 부패행위 방지에 ----- ----- 서울특별시의회----- ----- 신뢰 확보 및 권익을 보호하는 -----.</p>	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직자”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의회의원</p> <p>2.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공직자”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.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직자”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의회의원</p> <p>2.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</p>

다. 「서울특별시 공
무직 채용 및 복무 등
에 관한 조례」에 따
른 공무직 노동자
라. 「부정청탁 및
금품등 수수의 금지
에 관한 법률」에 따
른 공무수행사인

2. “부패행위”란 「부
패방지 및 국민권익위
원회의 설치와 운영에
관한 법률」 제2조제4
호에 해당하는 행위를
말한다.

제3조(의장의 책무) 서울
특별시의회 의장(이하
‘의장’이라 한다)은
공직자가 공정하고 청
렴하게 직무를 수행할
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
성하기 위하여 노력하
여야 한다.

제5조(청렴문화 조성 기
본계획 수립 및 시행)
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
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
울시의회 청렴도 향상
및 부패방지 기본계획
(이하 “기본계획” 이
라 한다)을 매년 수립

제3조(의장의 책무) 서울
특별시의회의장(이하
“의장” -----

-----.

제5조(청렴문화 조성 기
본계획 수립 및 시행)
① -----
----- 서울특
별시의회 -----

-----.

제3조(의장의 책무) (개
정안과 같음)

제5조(청렴문화 조성 기
본계획 수립 및 시행)
(개정안과 같음)

• 시행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청렴마일리지 제도) ①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활동 참여도,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·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·관리하는 제도(이하 “청렴마일리지 제도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10조의2(청렴마일리지 제도)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,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렴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청렴 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등 청렴 활동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성하고 확산하는데”를 “조성 및 확산하고 부패행위 방지에”로, “서울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, “신뢰를 확보하는”을 “신뢰 확보 및 권익을 보호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‘의장’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‘의장’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서울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청렴마일리지 제도) 의장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,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렴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청렴 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등 청렴 활동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의회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의장의 책무)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장(이하 ‘의장’이라 한다)</u>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<u>서울시의회</u>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조</u> <u>성 및 확산하고 부패행위 방지</u> <u>에</u>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</u>----- --- <u>신뢰 확보 및 권익을 보호</u> <u>하는</u> ----.</p> <p>제3조(의장의 책무) <u>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----- ----- <u>서울</u> <u>특별시의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0조의2(청렴마일리지 제도) 의</u> <u>장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관</u></p>

심을 유도하고,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렴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청렴 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등 청렴 활동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